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2. 7. 21(목) 10:00

제237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99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7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7. 13.

2. 제안이유

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이 2021. 12. 14. 개정, 2022. 4. 1.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도입된 첫만남이용권과 더불어 우리 구에서 출생한 다자녀 가정 중심으로 구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개정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‘새로 태어난 영아’를 지칭하는 용어를 “출생아동”으로 통일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(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별지 서식)
- 나.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기준 및 신청서류를 명확하게 정비함 (안 제5조, 안 제6조)
- 다.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결과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50만원으로 변경함 (안 제6호제1항)
- 라. 제8조 “다른 법령과의 관계”, 제9조 “시행규칙” 조문을 삭제함 (안 제8조, 안 제9조)

다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관련 내용 명시 등 출산축하금 신청 서식을 정비함
(안 별지 서식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, 제10조,
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21조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의 개정(2021. 12. 14. 개정, 2022. 4. 1. 시행)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우리 구 출산축하금 지원기준을 법률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으로 개정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·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‘새로 태어난 영아’ 를 지칭하는 용어를 “출생아동” 으로 통일하는 등 용어를 변경함 (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6조, 안 별지 서식)
- 2)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 기준 및 신청서류를 명확하게 정비함 (안 제5조, 안 제6조)
- 3) 첫만남이용권 시행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결과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50만원으로 변경함 (안 제6호제1항)

< 첫만남 이용권 개요 >

- (목적)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- (지원대상) 출생신고된 영유아 (출생후 28일 이내 사망한 신생아 제외*)
 - '22. 1. 1. 이후 출생아부터 지급
- (신청권자)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
- (신청기간) 출생신고 이후부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
- (지원금액·사용처) 200만원/출생아당, 유흥업소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
 -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 고려, 지나친 제한 지양
- (지원절차) 신청접수일로부터 '30일' 이내(불가피한 경우 60일 이내) 지급 결정 및 바우처 생성
 - 출생신고시(방문·온라인) 신청, 바우처 지급일(결정 통지)로부터 1년까지 사용
- (전달체계) (읍면동) 신청·접수 → (시군구) 지원결정 → (사회보장정보원) 바우처 생성·관리 → (읍면동/시군구) 대상자 관리

4) 제8조 “다른 법령과의 관계”, 제9조 “시행규칙” 조문을 삭제함

(안 제8조, 안 제9조)

5)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관련 내용 명시 등 출산축하금 신청 서식을 정비함

(안 별지 서식)

다. 검토의견

-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최근(2020.12.) 발표한 ‘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’ (2021~2025)¹⁾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첫만남 꾸러미 도입을 제시하고 있으며, 이에 관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위해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이 개정됨(2021. 12. 14. 개정, 2022. 4. 1. 시행)
- 이와 같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산 양육 지원의 내용 중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첫만남 이용권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1) 제1차 기본계획: 2006년~2010년, 제2차 기본계획: 2011년~2015년, 제3차 기본계획: 2016년~2020년
제4차 기본계획: 2021년~2025년

< 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핵심 정책 >

- ①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 임신·출생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경감하고,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해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 투자
 - (영아수당 신설) '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 지원,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사용. 부모의 선택권 보장 강화('22년 도입, '25년 월 50만원 목표로 단계적 인상)
 - (첫만남 꾸러미)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 인상(60→100만원), 아동 출생시 바우처(일시금) 200만원 신규 도입, 총300만원을 의료비·초기 육아비용으로 지원

- ②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'19년 10.5만 명에서 '25년 20만명으로 2배 확대 추진
 - (3+3 육아휴직제)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(통상임금 100%) 지원
 - (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) 통상임금의 80%, 최대 월 150만원(현행 50%, 최대 120만원)
 - (중소기업 지원 확대)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원 지원
 - (보편적 육아휴직 권리) 고용보험 가입 특고, 예술인, 플랫폼노동종사자 등으로 확대

- ③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, 서비스 내실화
 - '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% 달성 및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('22년 53만명까지 확대)

- ④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·교육지원 확대
 - 다자녀가구 전용임대주택 2.75만호 공급('21~'25) 등 다자녀 지원기준 2자녀로 단계적 확대
 - 일정 소득이하 다자녀 가구(3자녀 이상)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('22년~)

- ⑤ 고령자가 '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'를 보낼 수 있도록 기본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 체계 완성
 - (소득)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'21. 15만 가구 신규지원), 노인 일자리 확충(~'21. 80만개)
 - (돌봄)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확산('25),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충(통합재가급여, 단기보호·돌봄 확대)
 - (주거) 고령자 복지주택 등 공급(~'25. 2만호), 고령자보호구역 확대(25. 3,000개소 이상) 등

- ⑥ 고령자를 부양 대상이 아닌 '삶의 주체'로 인식, 신중년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
 - (노후소득)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, 퇴직연금 활성화
 - (고용) 신중년 생애경력설계 서비스(경력설계-훈련-취업지원 패키지),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(월40~80만원), 양질의 일자리 확충(사회서비스, 시니어인턴십 확충)
 - (건강) 사각지대 없는 만성질환 관리(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), 건강 인센티브제 도입

* 자료 : 보건복지부

관계법령

□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

[시행 2022. 6. 15.] [법률 제18580호, 2021. 12. 14., 일부개정]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2. 5. 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5. 23.>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(이하 “이용권”이라 한다)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(아동의 친권자·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·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·방법·시기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12. 14.>

□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[시행 2020. 5. 19.] [법률 제17280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·신체적 건강지원
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3. 안정된 주거생활
4. 태아검진 및 출산·양육의 지원
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6. 음란물·유혹가·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·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
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·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10. 17.>

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